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운용관리계약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운용관리계약서

_____(이하 "가입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은 아래 조항에 의거 개인퇴직계좌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가입자와 은행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설정하게 하는 개인퇴직계좌(이하 "이 계좌"라 합니다)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가입자와 법 제15조제1항에서 정의한 운용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가입자와 법 제16조제1항에서 정의한 자산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의 체결)

가입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확인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 (운용관리업무)

- ① 이 계약에 의해 은행이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은행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이하 "기록관리업무"라 합니다)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이하 "기록관리기관"이라 합니다)에 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기록관리기관은 계약부속현정서에서 정합니다
- ④ 은행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5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② 계약기간 종료일의 1개월 전까지 가입자 또는 은행이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게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연장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니다.

제6조 (가입자 및 은행의 의무)

- ① 은행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4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및 제15조제2항에 의해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자는 은행이 이 계약상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① 은행은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은행이 가입자에게 제시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합 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적립금 운용방법 중 가입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별도로 제시하며 가입자는 은행이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제시된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제공하는 제3항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 니다
-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3년이 안 되

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관련 실적

-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은행이 제7조에 의해 제시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으며, 매반기 2 회 이내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②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을 유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 2. 은행의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 3. 기타 은행이 허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청
- ③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후 제9조에 의한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별도의 운용방법 선정 또는 변경이 없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가 직전에 선정한 운용방법 을 해당시기의 운용방법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제9조 (부담금의 납입 등)

-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제1항의 부담금 외에도 다른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은행은 자산관리기관의 부담금 입금통지가 완료된 후에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 익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1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은행은 이 제도의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매년 1 회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우편

- 2. 교부
-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 4. 가입자와 은행이 합의한 방법

제12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주소, 전화번호,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가입자정보"라 합니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은행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 ① 은행은 이 계약의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합니다)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② 은행은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 급여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은행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4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 다

제14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관련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관련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 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 를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중도인출시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은행은 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급여의 지급)

-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 사유의 확인을 받아 은행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지시와 급여의 지급청구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 (이하 "급여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경우 은행은 급여이전을 위한 적립금자산의 매각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약이전을 위한 적립금자산의 매각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 ① 가입자 또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 (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가입자가 해지 요청시
-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② 가입자 또는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 (이하 "일반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의 퇴직금제도 전환 등 부득이한 경우
-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일반중도해지의 경우 은행은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계약이전)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계약이전 업무 처리시 계약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계약이전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9조 (면책)

은행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수단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 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 3.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20조 (계약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 ① 가입자와 은행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부속협정서를 작성합니다.
- ② 계약부속협정서의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와 은행이 협의하여 계약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인감신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조항해석 및 변경 등)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은행의 의견이 상위할 경우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은행 이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 ② 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가입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

가입자 또는 은행이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은행 내규 등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25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은행이 각각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주소: 성명: (인) 연 전 전 (인)

(별지1)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제1조 (기록관리업무의 위탁)

은행은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금융결제원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은행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용관리수수료 : 계약서 제4조에 따른 수수료
- 2.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3. 계약이전수수료 : 계약서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수수료 납부주체 및 부과기준)

- ① 제2조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수료별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용관리수수료
- 가.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의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연 0.6 %를 곱하여 계산하며, 은행이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산기준일에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 취득하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에 상당하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재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관리기관의 재량에 의해 고유계정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7 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

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인 출일, 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취득합니다. 이 때, 수수료의 계산기간은 가입자별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금번 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2. 중도해지수수료

가. 징구대상 : 계약체결일로부터 중도해지신청일까지 1년 미만 계약에 한함

나. 계산기준일 : 중도해지신청일

다. 징구일 : 중도해지일

라. 수수료 : 계산기준일 전일의 적립금자산 평가액 × 1.0 %

마. 징구방법 : 가입자의 신탁재산에서 징구

3. 계약이전수수료

가. 징구대상 : 계약이전신청계약

나. 징구일 : 계약이전일

다. 수수료: 15.000 원

라. 징구방법 : 가입자의 신탁재산에서 징구

-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5.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적립금자산에서 수수료를 징구하기 위하여 적립금자산을 매각한 결과 그 금액이 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적립금자산의 매각 순서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립금자산을 매각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계약서 제14조 및 계약부속협정서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 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 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니다.

- 1 MMF
- 2. 수익증권(채권형)
- 3. 수익증권(주식편입 비율 40% 이내)
- 4. 정기예 적금
- 5. 제2호 및 제3호의 수익증권에서 동일 유형의 경우 주식편입비율이 낮은 것

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6. 상기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 은행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적립금운용방법)

은행이 계약서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제시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법 및 퇴직 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입니다.

- 1. 예금
- 2. 적금
- 3. 보험(단,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의 경 우에는 주식편입비율 40%이내)
- 4.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통화안정증권 포함)
- 5.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채권 중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다만 자산유동화채권의 경우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 한함.)
- 6 외국채권(OECD회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은 것. 단.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갈음함)
- 7.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포함)(주식편입비율 40%이내. 단,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은 제외)
- 8. 해외수익증권(뮤추얼펀드 포함)(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된 것 중 주식편입 비율 40% 이내)
- 9.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 택저당증권을 말함.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함)
- 10. 학자금대출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 다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 급이 투자적격인 경우에 한항)
- 11. 기업어음(기업어음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 (A3-이상)에 한함)
- 12. 주가연계증권(공모로 발행되며 상환금액의 최대손실이원금의 10%이내인 경우에 한함.)

- 13. 파생결합증권(공모로 발행되며 상환금액의 최대손실이원금의 10%이내인 경우에 한함.)
- 14.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 15. 장내 파생상품거래(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함)
- 16. 장외 파생상품거래(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함)
- 17. 발행어음(은행 및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 18. 표지어음(은행 및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제6조 (가입자 교육)

- ① 계약서 제15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 비율 등 운용현황
- 2. 은행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 3.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4.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은행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1. 설명회
- 2. 전자우편(F-mail)
- 3. 온라인(Web)
- 4. 문서
- 5. 기타 이외의 방법 (
- ③ 은행은 매년 1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 ④ 은행은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가 입 자 주소:

성명: (인)

은 행 주소:

성명: (인)